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현황 및 시사점

李 兪 錫 (研究委員, 3705-6274)

국내 주식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해당기업의 신용도나 재무상황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
 -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건수는 증권시장의 거래규모 확대와 더불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주요 자율규제기구 및 금융감독당국의 시장 감시 기능이 강화되면서 2001년 이후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2007년 불공정거래행위 건수는 202건으로 절정을 이뤘던 2001년에 대비해서는 54.7% 수준이나 전년 대비로는 22% 증가하였음.
 - 불공정거래행위 형태는 외환위기가 일어난 1997년에는 단기매매차익취득이 16.2%, 시세조정이 12.6%로 주를 이루었지만, 2007년에는 시세조정 및 미공개정보이용이 각

〈표〉 주식시장(유가증권, 코스닥, 선물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현황 추이 (단위 : 건수, ()내는 비중)

구분	시세조정	미공개정보 이용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보고위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위반	단기매매차익 취득	기타	계
1997	21 (12.6)	15 (9.0)	19 (11.4)	20 (12.0)	27 (16.2)	65 (38.9)	167 (100)
1998	33 (15.9)	19 (9.1)	49 (23.6)	0 (0.0)	49 (23.6)	58 (27.9)	208 (100)
1999	31 (13.6)	28 (12.3)	63 (27.6)	5 (2.2)	65 (28.5)	36 (15.8)	228 (100)
2000	61 (20.5)	31 (10.4)	45 (15.2)	57 (19.2)	59 (19.9)	44 (14.8)	297 (100)
2001	152 (41.2)	15 (4.1)	32 (8.7)	87 (23.6)	25 (6.8)	58 (15.7)	369 (100)
2002	131 (51.6)	25 (9.8)	29 (11.4)	27 (10.6)	24 (9.4)	18 (7.1)	254 (100)
2003	102 (51.5)	27 (13.6)	41 (20.7)	0 (0.0)	27 (13.6)	1 (0.5)	198 (100)
2004	103 (45.6)	40 (17.7)	42 (18.6)	1 (0.4)	37 (16.4)	3 (1.3)	226 (100)
2005	106 (40.9)	59 (22.8)	65 (25.1)	0 (0.0)	29 (11.2)	0 (0.0)	259 (100)
2006	59 (35.8)	43 (26.1)	42 (25.5)	2 (1.2)	17 (10.3)	2 (1.2)	165 (100)
2007	64 (31.7)	57 (28.2)	44 (21.8)	데이터통합		37 (18.2)	202 (100)

자료 : 매년연차보고서, 금융감독원



각 31.7%와 28.2%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최근 들어서는 미공개정보이용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증권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크게 불공정행위 규제강화, 효율적인 불공정행위 거래 조사를 위한 거래소·금융감독당국·금융회사 간 협력강화, 불공정거래 사전 감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들 수 있음.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금융기관의 경영허용,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 출현 등으로 인하여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도 보다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법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주식대량보유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고 주체를 불문하고 공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금감위 등에 보고 후 지체 없이 당해 주권발행회사에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내부자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범위확대에 따라 금지되는 증권에 당해 법인과 관련된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종증권도 포함하였음.
- 또한 종전에는 단기매매차익반환 대상증권이 현행 주식관련 증권으로 한정되었으나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모든 증권으로 확대하고, 증권회사도 당해 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에 신종증권도 포함하였음.
- 이 밖에 규제근거가 없던 현·선 연계 시세조정 및 파생결합증권과 기초자산인 증권 간의 양방향 연계 시세조정을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하였음.

■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시장의 신뢰감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뿐 아니라 내부통제시스템의 약화를 의미하므로 궁극적으로는 해당기업의 신용도나 재무상황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음.

- 최근 프랑스 제2위 은행인 소시에테 제네랄(SG)에서 선물부문 딜러가 회사 내 정보시스템을 악용하여 파생상품투자를 통해 세계금융역사상 최대 규모인 49억 유로(약 71억 달러)의 손실을 발생시켰으며, 일본 최대 증권사인 노무라증권에서도 내부자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여 주식매매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한 사건이 발생하여 회사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줌.

■ 시장을 왜곡시키고 시장참가자들의 공정거래의지를 저하시키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경제적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 시 부과되는 금전적 불이익이나 법적인 처벌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익보다 크도록 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킬 필요 **KIF**